

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02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07일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년 10월 16일(제2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40호

2. 제안이유

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체결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무상 양도·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,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-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도

-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
- 대학은 군 출연재산에 대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의 관리

다. 대학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

라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,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, 필요한 경우 수시 제출

마. 출연재산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- 군비 출연과 관련한 운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의 검사 실시 등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승강기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, 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런데 「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」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실체는 없고,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「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

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음.

-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창군의 역점시책인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라고 규정한 것을 “이 조례는 공포 후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” 라고 조례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수정안 요지

- 제3조 ②항 내용 중 “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한 것을 “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”라고 일부 수정하고
-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라고 규정한 것을 “이 조례는 공포 후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” 라고 수정

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

조 례 안	수 정 안	수정의견
<p>제3조(재산출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-- 비용의 <u>전부 또는 일부</u>를 -----.</p> <p>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3조(재산출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-- 비용을 (삭제)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 후 <u>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</u>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○ 비용의 “전부 또는 일부”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. 라고 할시 차후 “전부 또는 일부”라는 말로 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함.</p> <p>○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을 시 조례에 의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임으로 학교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.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의견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 시 상호 다툼이 생길 우려를 방지하고 ○ 학교법인 설립 후 지원이 가능 하도록 부칙을 수정한 것임 		